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13

다. 상 정 일 자 : 2003. 10. 13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보건소장 서 대 식

나. 제안사유

-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자 규정 (안 제2조)

-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 법 제9조 제4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
- 법 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임. 내용상, 절차상 별다른 하자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결의 담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 례 안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법 제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9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법 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99. 8. 5) 3.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법 제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제3조(과태료와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 의한 청문결과의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p>	<p>제3조(과태료와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p>

[현 행]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관련)

I.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 한다.

II.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관련조항	과 태 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법 제9조 제2항	10	30	5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4항	20	30	30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법 제34조 제1항	20	30	50

[개 정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관련)

I.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 한다.

II.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관련조항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30	100	150	300
2. 법 제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30	100	150	300
3. 법 제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20	50	100	200
4. 법 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 제2항 제2호	20	50	100	200